

인쇄일자 : 2010.07.07

## 정보(공개)결정통지서

수신자 (110-500) 서울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투명사회를위한 정보  
공개센터 정진임

접수일자	2010.06.16	접수번호	1085431
청구정보내용	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제19조 6항 및 34조에 따라 2010년 5월 31일까지 통보받은 기록물 생산현황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.		
공개내용	평소 특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귀하께서 요청하신 2009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 귀하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.2100.8786(장영미)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끝		
공개방법	공개형태	전자파일	
	교부방법	온라인	
공개일시(기간)	2010.06.17 09 시	공개장소	
수수료(A)	우송료(B)	수수료감면액(C)	계(A+B-C)
0원	0원	0원	0원
수수료산정내역		수수료납입계좌(입금시)	
<p>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</p> <p>2010년 06월 17일</p> <p>특임장관</p>			

처리과명	특임장관실	문서번호	특임장관실 -1376(2010.06.17)
기안자	장영미	직위/직급	기록연구사
검토자		직위/직급	
협조자		직위/직급	
결재권자	정부효	직위/직급	총무과장
주소	(110-760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5호		
연락처	02-2100-8786 (전송: )		
전자우편주소	girok79@korea.kr		

## ※ 유 의 사 항

-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1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 2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3.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 또는 현금(기타 공공기관)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(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·수입증지 또는 현금)와 우송료(우표 등)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.